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철도의 신설(개량)사업의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운행을 내실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선'과 '측선'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인용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로써 '측선' 등 정의

나.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 과정에서”를 “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로 하고, 사전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시설물검증시험 과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기한을 “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로 개정(안 제8조)

다.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고, 영업시운전 시험계획에 포함되도록 단서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본선”이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2. “측선”이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8조제3항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시설물 검증시험 과정에서”를 “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로 한다.

가.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확인증,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단,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경우 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전점검 결과 조치현황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영업시운전 시험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36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0. (생략)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 1~20. (생략) 21. "본선"이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2. "측선"이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8조(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사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7. (생략) 8.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기관의 검사 완료 가능 여부 가.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확인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단서 신설>	제8조(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7. (현행과 같음) 8. ----- ----- 가. ----- -----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 ----- ----- ----- 단,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경우 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 조치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완료하고,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검증시험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열차 안전운행 및 시설물검증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④ ----- ----- ----- ----- ----- ----- ----- -----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검증시험 과정에서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검증시험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12. 그 밖에 시설물검증시험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2, 별표3의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을 참조하여 시험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을 생략·축소하거나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철도운영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 등을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